#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5

발의연월일: 2020. 10. 26.

발 의 자:양향자·신정훈·이광재

윤후덕 · 김수흥 · 이병훈

강병원 · 한준호 · 홍성국

정일영・양정숙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낮은 법인 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어민 등을 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규정은 한시적으로 2020년 또는 2021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간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농어민과 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이나 서민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 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 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0년 12월 31일</u> 이전	<u>2023년 12월 31일</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저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u>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2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23</u>
년 12월 31일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2. <u>2025년 1월 1일</u>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u>20</u>	) <u>23년</u>
12월 31일	
	· <u>2</u>
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② 2025년 1월 1일	
]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 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 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② (생 략)

부가가치세 등	의 감면	등) ①
2023년 12월 31	<u>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현행	과 같음	)